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최근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및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,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횡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0000호, 2024. 1. 00. 공포, 2024. 5. 1.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알뜰교통카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의 명칭 및 정의 변경(안 제11조의10 등 개정)

현행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횡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(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”)으로 개정하고자 함

나. 위임·위탁 규정 등 정비(제26조의2, 제26조의3 등 개정)

사업의 명칭 및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위임·위탁 규정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10의 제목 “(알뜰교통카드 사업)”을 “(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라 알뜰교통카드 (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대한 지원 사업(이하 “알뜰교통카드”를 “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알뜰교통카드”를 각각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알뜰교통카드”를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을 위한 교통카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“알뜰교통카드”를 “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10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“통합정보시스템”은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정보시스템”으

로 본다.

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제26조의3제1호 중 “알뜰교통카드 사업 및 알뜰교통카드”를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알뜰교통카드”를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”으로 한다.

부 칙

법률 제00000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부칙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2024년 5월 1일을 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10(<u>알뜰교통카드 사업</u>)	제11조의10(<u>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</u>) ① -----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2제1항에 <u>따라 알뜰교통카드(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(이하 “알뜰교통카드 사업”이라 한다)을</u>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.	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(이하 “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</u>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<u>알뜰교통카드 사업</u>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4. ----- <u>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</u> ----- -----
② <u>알뜰교통카드 사업</u> 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.	② <u>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</u> ----- -----.
1. <u>알뜰교통카드 사업</u> 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	1. <u>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</u> ----- -----

2.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일 것

제26조의2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
·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
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
호의 권한(제1호의2 및 제2호부
터 제7호까지는 「여객자동차
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1
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
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
으로 한정한다)을 「대도시권
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

제26조의2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
· 위탁) ① -----

통위원회에 위임한다.

1. 알뜰교통카드 사업 및 알뜰 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

1의2. ~ 7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제26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국토교통부장관(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알뜰교통카드 사업 및 알뜰
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구축
· 운영에 관한 사무

2.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알뜰
교통카드 사업에 필요한 재정
지원에 관한 사무

_____.

1.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1의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[illegible]

1.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
업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
급 -----

2. ----- 대중
교통비 지원 및 환급 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30 (044) 201 - 5086